

지주회사 설립동향

최근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 들어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 또는 전환신고되었으며, 이 중 3개사는 이미 신고수리되었다.

* 신고수리 : 씨앤앰커뮤니케이션(주), 에스케이엔론(주), (유)케이아이지홀딩스

* 심사중 : 대한색소공업(주), (주)SDN, (주)동서 지난 5월 24일에 신고수리된 (유)케이아이지홀딩스는 미국의 화학회사인 Air Products Manufacturing Corporation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Air Products Manufacturing Corporation이 협금출자하여 설립(99.12.2)한 후 한국산업가스(주)의 주식 51%를 취득하

여 지주회사로 전환(지주비율 99.4%, 부채비율 55.7%)하였으며, 산업용가스 제조업체인 자회사 1개와 손자회사 7개를 소유하고 있다.

(유)케이아이지홀딩스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결과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슈마커코리아(주)는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손자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자회사 제품의 판매, 자회사에 대한 원재료 제공 등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만 손자회사로 소유가능)에 해당되지 않아 2000년 1월 1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만 소유할 수 있다.

〈(유)케이아이지홀딩즈의 재무상황('99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A)	부채총계(B)	자본총계(C)	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D)	지주비율(D/A)	부채비율(B/C)
196,873	70,416	126,457	195,664	99.4	55.7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발기대회 개최

지난 5월 31일(수) 11시, 서울 서초동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이버소비자단체 대표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소비자협의회(회장 이필상, 「함께 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고려대 경영대학장) 발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들 단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 사이버단체들로서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간·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전천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이트 개설의 용이성으로 다양한 소비자욕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인구(1999년말 940만명)의 증가로 그 영향력은 점증하여 21세

기 소비자단체의 새로운 전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이버소비자협의회는 전체협의회와 분과협의회로 구분되며, 회원단체들은 소비자정보제공분과, 전자거래감시분과, 소비자불만처리분과 등 3개 분과협의회로 구성·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운영중인 소비자종합홈페이지에 협의회 소식코너·공동소비자 상담창구·사이버토론판장 개설 등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적극 개편하여 회원단체의 주요 정보채

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회원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활동의욕을 고취시키고,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동 협의회가 명실공히 디지털경제시대에 있어서 소비자문제의 과수문으로 그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또한 협의회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통해 직권조사대상 선정 및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법령개정 및 규제개혁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이버소비자협의회의 활동내용>

- 다양한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유통체계 구축

- 소비자종합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의 상호교환
- 수집된 중요한 소비자정보를 소비자종합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 등

-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 전개

- 회원단체별로 인터넷사이트를 분담하여 주 1회 감시, 그 결과를 공개
- 협의회 전체차원에서 불법사이트 일제 감시행사 실시(9월, 11월)
- 가상현정사이트(Teaser site) 설치·운영 등

- 소비자불만의 해결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과 건의 등

- 소비자종합홈페이지에 「공동상담창구」 개설·운영
- 「Complaint Letter」, 「소비자 경고」 제도 실시 등

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 표준약관 심사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규모와 분야가 급격히 확산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99년 12월 29일 청구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한 표준약관 심사가 진행중에 있고, 금융결제원이 21개 은행, 7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화폐를 금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오프라인(Off-line) 전자화폐인 K-cash의 회원 및 가맹점약관(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5월 26일 청구하였다.

공정위는 전자화폐가 향후 상거래분야에서 유망한 결제·지급수단이 될 것을 감안하여 금년 6월중으로 관련 정부기관,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 그리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심의 및 토론을 통해 금년 10월까지는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접근수단의 해킹 등에 의한 위·변조사고 발생시 전자화폐 발행기관, 회원, 가맹점간의 책임부담, 약관 위반시의 책임 등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있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

보험업 분야의 공동행위 제도 및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보험당국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험업 분야에서는 공동행위와 관련된 경쟁제한적 규제 및 관행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개별사업자들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보험업 분야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경쟁제한적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도 개선의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상품 개발관행의 금지

우선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공동상품 개발관행은 보험료·보험조건 등 보험시장 전반에 걸쳐 개별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특히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보험가격 자유화 조치로 기대되는 활발한 가격경쟁 효과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보험사업자들에

게 향후 보험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공동상품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공정위로부터 공동행위 인가를 받아 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별회사들간 활발한 상품개발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상품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집인(생활설계사) 스카웃금지협정의 폐지

생명·손해보험 업계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모집인을 채용하는 행위를 상호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 1인당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3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보험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보험모집인은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보험상품 판매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웃금지협정으로 인하여 개별 보험회사간 유능한 보험모집인 스카웃경쟁이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는 보험모집인은 6개월간 사업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다른 보험회사와 거래할 수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스카웃금지협정들은 보험업법 제17조(상호협정)에 의거 보험감독당국의 공동행위 인가를 얻었으므로 공정위가 직접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6월중 보험회사(협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스카웃 금지협정을 폐지하도록 요청하고, 협정폐지가 지체될 경우 금감위

와 협의하여 보험업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3개 스카웃금지협정들에 대한 폐지명령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스카웃금지협정의 폐지로 30만 생활설계사들이 제재금을 부담하거나 6개월간 사업활동을 중단하지 않고도 다른 사업자와 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능력있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스카웃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보험판매 방식이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2000년 업무계획 국회 정무위에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2000년 공정위의 업무계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동 보고에서 2000년 4월 기준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은 46조원이며, 순자산액 대비 출자비율은 잠정적으로 32.9%정도로 현재 정확한 수치는 추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이 출자총액제한과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한도초과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명령과 처분대상주식에 대해서는 명령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5~30대 기업집단 중 내부거래 협의가 큰 7개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하반기에는 '98년 이후 대기업에서 분사된 기업에 대해 내부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기업부문의 경쟁촉진을 위해 내부거래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가 중소기업 자금난과 연쇄도난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고 2000년 5월부터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의 기간중 카드결제실적이 412개 구매기업에서 3.72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핵심 역할이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활성화시키는 것인 만큼 디지털화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맞추어 기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사무실 기준, 최저자본금 기준, 설비·기술인력 기준 등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에 해당하는 과제를 개선하고, 의사 등 전문직종의 광고제한규정, 보험영업분야의 공동상품 개발, 인력스카웃금지협정 등 주요 서비스분야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6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회사간 신규채무보증 금지와 상호 출자 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 4월 15일 2000년도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이후부터 5월말까지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는 21개사가 신규편입된 반면, 5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0년 6월 1일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지정시 544개사에서 560개사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1~4대 기업집단에서 7개사, 5대 이하 기업집단에서 9개사가 증가하였다.

◆ 2000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0. 4. 15	편 입				제 외				증 감	2000. 6.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기타		
전 체	544	16	5	-	21	1	2	-	2	5	16
1~4대	162	7	2	-	9	-	2	-	-	2	7
5~30대	382	9	3	-	12	1	-	-	2	3	9
											391

◆ 2000년 5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편입 : 21개사(지분취득 5, 회사설립 16)

◎ 제외 : 5개사(지분매각 2, 합병 1, 친족분리 1, 기타 1)

구 分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오토에버닷컴(주)	인터넷 관련업	회사설립	대한알루미늄공업(주)	알루미늄 압연업	지분매각	1
	이에이치디닷컴(주)	제조·서비스업	회사설립				
삼 성	케어캠프닷컴(주)	의약관련 도·소매업	회사설립	-	-	-	4
	(주)씨보이네트	인터넷서비스업	회사설립				
	(주)이삼성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업	회사설립				
	삼성아이젠(주)	전자상거래업	회사설립				

공정위업무활동

구분	편입			제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엘지	-	-	-	(주)코코넛	부가통신업	지분매각	△1
에스케이 케이	국민생명(주)	생명보험업	지분취득	-	-	-	3
	(주)에스케이와이번스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	회사설립				
	(주)신세기통신	전기통신업	지분취득				
한진	(주)싸이버로지텍	종합해운정보 시스템 운영	지분취득	-	-	-	1
금호	-	-	-	동아생명보험(주)	생명보험업	금호생명보험(주) 에 힘병	△1
한화	한화기술금융(주)	창업투자업	회사설립	-	-	-	1
두산	네오플러스캐피탈(주)	창업투자업	회사설립	-	-	-	1
현대정유	-	-	-	(주)우림석유	석유류 도·소매업	기타(임원변경 및 채무보증해소)	△1
동국제강	부산제철부두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	-	-	5
	부산항사부두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마산항5부두운영(주)	부두시설관리업	회사설립				
	(주)센텔	정보통신기기 렌탈업	회사설립				
	부산벤처기술투자(주)	창업투자업	지분취득				
코오롱	코오롱벤처캐피탈(주)	창업투자업	회사설립	-	-	-	1
아남	-	-	-	동안엔지니어링(주)	환경시설(수처리) 건설업	친족분리	△1
새한	(주)애니비에스	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업	회사설립	-	-	-	1
신세계	(주)신세계드림 익스프레스	운송업	회사설립	-	-	-	1
영풍	한국시그네틱스(주)	전자관 및 전자부품제조업	지분취득	-	-	-	1
계	21			5			16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상임위원 임명

상임위원

(임기: 2000. 6. 10 ~ 2003. 6. 9)

조학국(趙學國, 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

● 서기관 전보

전자거래보호과장

이성구(李星求, 前 약관제도과장)

약관제도과장

서석희(徐奭熙, 前 약관심사과장)

단체과장

신호현(申豪鉉, 前 하도급1과장)

하도급1과장

김태亨(金泰亨, 前 하도급2과장)

하도급2과장

박선광(朴宣光, 前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석준(李錫準, 前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직대)

조용광(趙鏞光, 前 조사기획과)

공정위 본부

김성만(金成晚, 前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직대)

전자거래보호과

임은규(林銀奎, 前 약관제도과)

전자거래보호과

김성환(金城煥, 前 공정위)

약관제도과

김종선(金鍾善, 前 약관심사과)

소비자기획과

김준범(前 공정위)

● 사무관 전보

전자거래보호과

이유태(前 약관심사과)

전자거래보호과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총리령)에 의해 5월 19일 소비자보호국에 전자거래 보호과를 신설하고, 약관제도과와 약관심사과를 약관제도과로 통합하였습니다.

